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3년 11월 29일 김봉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주차료 감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50% 감면함.(안 제5조제3항제2호).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주차료 감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